

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21 - 103 |
|----------|------------|

| | |
|-----|------|
| 제출자 | 거창군수 |
|-----|------|

1. 제안이유

-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(2021.12.31.)됨에 따라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에 전문적인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.
- 근거 :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연양

- 시설명 :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
- 위치 :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번지
- 대지면적 : 36,376㎡ (토지소유자 : 거창군)
- 연면적
 - 당 초 : 8,219㎡(선별3,499㎡, 저장1,780㎡, 기타 2,940㎡)
 - 1차보완 : 2,874㎡(선별1,171㎡, 저장1,467㎡, 기타236㎡)
 - 2차보완 : 1,510㎡(선별1,180㎡, 저장330㎡)
- 처리능력 : 연간 15,000톤 처리
 - 선별시설 : 1일 50톤 처리, 2조식 프리트레이방식, 54라인 38등급
 - 저장능력 : 저온저장고 3,015톤 저장(당초 1,440톤 → 보완 3,015톤)

나. 위탁사무

- 시설 : 유통센터 토지·건물·기계·물류기기 유지관리
- 운영 : 농산물 수집·출하·판매기능 등

다. 그간의 추진사항

- 2005. 5. 19. : 서북부경남거점APC 대상자 선정 (농림축산식품부)
- 2007. 5. 30. : 농업회사법인 (주)NH유통 설립
- 2008. 9. 9. ~ 2009. 10. 25. : 서북부경남거점APC 건립
- 2009. 11. 17. ~ 2014. 12. 31. : (주)NH유통 1차 위탁 운영
- 2012. 7. 27. : 서북부경남거점APC 시설보완사업 1차 준공
- 2015. 1. 1. ~ 2018. 12. 31. : (주)NH유통 2차 위탁 운영
- 2019. 1. 1. ~ 2021. 12. 31. : (주)NH유통 3차 위탁 운영
- 2019. 12. 20. : 서북부경남거점APC 시설보완사업 2차 준공

다. 운영계획

- 위탁자 공모
 - 위탁기간 : 2022년 1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까지(3년)
- 위탁운영 방법
 - 시설물 관리, 농산물 수집·출하·판매기능 등 통합운영
 - 거창군·함양군·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
 -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, 출하자에게 산지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
 -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장비와 인력 확보,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한 원물의 고급화 노력 이행

라. 소요예산

- 없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“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”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 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
- 「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5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

나. 양우계획

- 운영주체 위탁 군의회 동의 : 2021년 9월
- 운영주체 공모 모집 및 선정 : 2021년 9 ~ 10월
- 거점APC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: 2021년 11월
- 위탁 운영 실시 : 2022. 1. 1 ~ 2024. 12. 31.

다. 위탁운영계획 : 따로 붙임

서북부경남거점APC 위탁 운영 추진계획

서북부경남거점APC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(2021.12.31.)됨에 따라 위탁 운영자 공개모집으로 투명성·전문성을 강화하고 산지유통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.

I 법적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
-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
-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15조
⇒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 가능

II 시설개요

□ 시설연혁

- 2005. 5. 19. : 서북부경남거점APC 대상자 선정(농림축산식품부)
- 2007. 5. 30. : 농업회사법인 (주)NN유통 설립
- 2009. 4. 1. : 거창사과원예농협이 주관농협 선정/지분율 51%
- 2009. 9. 25. : 서북부경남거점APC 준공/개장 11. 10.
- 2012. 7. 27. : 서북부경남거점APC 시설보완공사 1차 준공
- 2019. 12. 20. : 서북부경남거점APC 시설보완공사 2차 준공

□ 시설현황

- 위 치 : 거창군·읍 거합대로 3372
- 대지면적 : 36,376㎡(토지소유자 : 거창군)
- 사 업 비
 - 당 초 : 19,303백만원(기금7,750, 도비3,100, 거창7,012, 함양1,240, 합천201)
 - 1차보완 : 3,279백만원(국10, 기금1,560, 도624, 군1,085)
 - 2차보완 : 2,653백만원(기금1,326.5, 도398, 군928.5)

- 연 면 적
 - 당 초 : 8,219m²(선별3,499m², 저장1,780m²(1,440톤)/기타2,940m²)
 - 1차보완 : 2,874m²(선별1,171m², 저장1,467m²(1,335톤), 기타236m²)
 - 2차보완 : 1,510m²(선별1,180m², 저장330m²(240톤))
- 처리능력 : 연간 15,000톤 처리
 - 선별시설 : 1일 50톤 처리, 2조식 프리트레이방식, 54라인 38등급
 - 저장능력 : 저온저장고 3,015톤 저장(당초 1,440톤→보완 3,015톤)
- 지 분 율
 - 부 지 : 거창군 100%
 - 건축물+시설(당초) : 거창군 77%, 함양군 20%, 합천군 3%
 - 건축물+시설(1차) : 거창군 82.2%, 함양군 15.4%, 합천군 2.4%
 - 건축물+시설(2차) : 거창군 86.2%, 함양군 11.9%, 합천군 1.9%

□ 운영현황

- 위탁기간
 - 1차 2009. 11. 17. ~ 2014. 12. 31. (5년 1개월간) / (주)NH유통
 - 2차 2015. 1. 1. ~ 2018. 12. 31. (4년간) / (주)NH유통
 - 3차 2019. 1. 1. ~ 2021. 12. 31. (3년간) / (주)NH유통
- 운영주체 : 농업회사법인 (주)NH유통 / 대표이사 김학두
 - 주관농협 :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/ 조합장 윤수현
 - 참여농협 : 14개소 / 거창 7, 함양 2, 합천 5
- 자 본 금 : 2,000백만원(거창원협 51%, 기타농협 49%)

III 공개모집 추진계획

□ 위탁운영주체 선정

-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주체 선정
 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및 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
 -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(위탁신청) 및 제17조(운영주체 선정)
- 공공유형 과수거점APC 운영 : ‘공공소유 민간운영’ 원칙
 - 조례로 위탁운영자 선정기준, 운영기간, 운영방법, 위탁수수료 등 명시 운영

-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4. 12. 31.(3년간)
-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
 - 인원수 : 15명(위원장 1, 부위원장 1, 위원 13)
 - 위원장 : 거창군 부군수
 - 위 원 : 14명 이내(공무원6, 군의원1, 생산농가2, 함양군·합천군3, 전문가2)

□ 위탁자격

- 근 거 :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
- 자격요건
 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
 -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 -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
 - 제1호의 생산자단체, 제2호의 법인 및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 -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3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
□ 위탁범위

- 위탁시설 : 거점APC 토지·건물·기계·물류기기 유지관리
- 위탁운영 : 농산물 수집·출하·판매기능 등

□ 공고방법

- 장 소 : 군 공보 및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
- 공고기간 : 2021. 9. ~ 10. (15일간)

□ 제안서 제출

- 접수 처 :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
- 접수방법 : 직접방문(※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)
- 제출서류
 - ① 위탁신청서 1부, ② 정관 1부,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, ④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, ⑤ 시설물관리,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1부, ⑥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(원물확보계획, 마케팅계획, 투자계획, 경영계획 등 포함) 1부, ⑦ 기타 증빙서류 1부

IV **향후계획**

- 위탁 운영주체 공개모집 군의회 동의 : 2021. 9.
- 운영주체 공개모집, 제안서 평가·선정 운영위원회 개최 : 2021. 9. ~ 10.
- 거점APC 위·수탁 운영 협약 체결 및 공증 : 2021. 11.
- 위탁 운영 실시 : 2022. 1. 1. ~ 2024. 12. 31. (3년간)

V **기대효과**

- 거점APC 위탁 운영자 공개모집으로 투명성·전문성을 강화하고 거창군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산지유통 활성화 도모

관 계 법 령(요약)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. 20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. 20.>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<신설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 <신설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08. 12. 26.]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3. 6. 21., 2015. 7. 20.>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 <신설 2013. 6. 21., 2015. 7. 20.>

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 라 한다)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4.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6. 21.>

[전문개정 2009. 4. 24.]

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3조(적용범위)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(개정 2013. 6. 12)
-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.(개정 2013. 6. 12)
-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(개정 및 후단신설 2013. 6. 12)
-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3. 6. 12)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-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.(전문개정2013. 6. 12)
-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 하도록 한다.(개정 2013. 6. 12)

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5조(설치운영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
2.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사업
3. 그 밖에 군수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5조(운영위탁)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
2.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3.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
4. 제1호의 생산자단체, 제2호의 법인 및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5.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3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
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.

③ 유통센터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.

제16조(위탁신청) ① 군수가 유통센터의 운영주체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적인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유통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관
2. 법인등기부등본

3.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
4. 시설물 관리,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
5.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(원물확보계획, 마케팅계획, 투자계획,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)
6.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 관리·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

제17조(운영주체 선정) ① 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산물의 수집·판매능력, 투자계획, 자금조달계획, 경영계획, 인력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.
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8조(위탁협약 및 지정)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운영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,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.
 ② 군수는 지정서 교부 시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.